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63 발의연월일: 2021. 8. 2.

발 의 자:김성주·강선우·강준현

김민철 • 양정숙 • 윤준병

이정문 · 최종유 · 최혜영

한병도 • 허종식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급증으로 구조적 악화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연동된 보험료 부과·경감 제 도에 따라 코로나19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경감 조치에 의해 경감 여 력이 없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까지 동시 경감되는 등 재정여건 악 화 요인에 대한 자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그리고, 동시에 건강보 험료의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 장기요양보험료율로 인한 과부담 인식 에 따른 조세저항 심화가 우려됨.

한편, 재정안정화, 급여이용 유도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급여·등급별 본인부담 차등화가 필요하나 일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본인부담 조 항으로 인한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산정 조항·경감 제도 등) 및 본

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보험료 산정 조항 개정(안 제9조제1항 개정)
 - 1) 보험료 부과표준을 소득이 아닌 건강보험료로 설정하여 통합 징수의 효율성 및 낮은 조세저항 실현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보험료율 급등에 따라 실제 대비 높은 명목 요율에 대한 과부담 인식 등의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현행 보험료 산정 조항의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를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곱하여'로 개정하여 부과 기반, 징수 통합의 효율을 잃지 않으면서도 부과 표준을 '사실 상' 소득으로 변경하여 과부담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 나. 건강보험료 감면 예외 조항 신설(안 제9조제3항 신설)
 - 1)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공제하는 현행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조항에 따라, 건강보험의 감면이 장기요양보험에도 자동 적용되어 장기요양보험 특성과 상충하는 조항이 동시 또는 중복 적용되거나, 대규모 건강보험료 정책적 경감이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음.
 - 2) 이에 현행 감경 규정(법 제10조 등)을 유지하면서 장기요양보험 료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 규정 중 일부에 대한 적용 예외

여지를 두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강보험의 경감 조치 중 중복 적용되는 경감조치 혹은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감면에 대한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장기요양재정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본인부담 조항 개정(안 제40조 개정)

- 1) 재정안정화, 급여이용 유도 등 정책 수단으로 이용급여·등급별 본인부담 차등화가 필요하나 법률을 통한 일률적 규정으로 인하여 한계가 존재하며, 잠재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급여에 대한 선별·예비 급여 형태의 도입 역시 어려운 문제가 있음
- 2) 이에 본인부담률의 별도 상한 규정 없이, 건강보험과 같이 시행 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본인부담률의 수준 을 재정여건, 합리적 급여이용, 지불 능력 등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장기요양보험료율을"을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 강보험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①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하는 급여의 종류 및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 보험법 시69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 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 ----- 같은 법 제73 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한다.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를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 <신 설> 양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또 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 제되는 비용을 달리 적용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의 공제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0조(본인부담금) ①재가 및 시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제23조에 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 따른 장기요양급여(특별현금급 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 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대 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 여비용의 100분의 15
- 2.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신 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	우의	일.	부(여	기히	- "拒	-인	부딩	감금	L"
이란	} ē	<u></u>)를	본	인이	부	담	한디	ᆉ.
0]	경우	<u>)</u>	장기	요	양급	여틭		받	는
수 <u></u>	급자.	의	장기	요	양등	급,	(٥	용 :	하
는	급o	ᅧ의	종	류	밎	수	スピ	등	케
따라	}	보인	부딤	計의	수	준을	<u>)</u>	달i	리
<u>정</u> 할	<u></u> 수	= <u>9</u> ,	[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본인부 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u>(5)</u> <u>A</u>	4항